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88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오경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0.
3. 회부연월일 : 2024. 8.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WHO)는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발달과 생애 전반에 미칠 효과를 고려해 매일 평균 60분 이상(중간 정도 이상)의 신체 활동(운동)을 하기를 권장하고 있음. 하지만 WHO에서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등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의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2024년 6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644명 수준으로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인 바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평생체육

향유 능력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u>배치</u> 할 수 있다.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 ----- ----- ----- ----- 배치 <u>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u>자격기준, 임용 등에</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u>배치 및 자격기준, 임용 등에</u> - -----.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¹⁾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²⁾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교체육 진흥법」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³⁾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⁴⁾의 자격을 갖춘 체육전문강사로서,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⁵⁾,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8년 ‘초등체육수업의 정상화’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으로 확대·시행되었으나, 연도별 스포츠강사의 배치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4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183개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644명으로 학교 수 대비 26.6%에 불과한 수준임.

3)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이에 개정안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즐겁고 다양한 체육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스포츠강사의 의무 배치에 대해 학교현장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은 교육부·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용을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작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예산 부담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라 12개 교육청에서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아울러, 일선 초등학교⁶⁾에서는 스포츠강사 확대보다는 전문성을 소유한 ‘체육전담교사 의무 배치’를 통한 체육시수 확대가 실효성이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 및 스포츠강사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교육부에 따르면 32개교에서 제출한 의견임

참고로, 현행법 제13조제1항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체육전문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문이 이동되어 조문 인용에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호”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186

7) 참고로, 해당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17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